

4.3.9 성적평가규정

제정	2000. 04. 21.	개정	2019. 12. 03.
개정	2000. 11. 07.	개정	2020. 11. 26.
개정	2016. 06. 23.	개정	2022. 02. 03.
개정	2016. 11. 15.	개정	2022. 04. 04.
개정	2017. 01. 19.	개정	2022. 07. 28.
개정	2017. 06. 19.	개정	2022. 12. 07.
개정	2017. 12. 19.	개정	2023. 02. 02.
개정	2018. 01. 25.	개정	2023. 03. 31.
개정	2018. 03. 14.	개정	2023. 08. 07.
개정	2018. 09. 05.	개정	2024. 04. 01.
개정	2019. 02. 01.		
개정	2019. 06. 04.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초당대학교(이하 “본 대학”이라 한다) 학생의 학업성적평가(이하 “평가”라 한다)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평가목표) 평가는 본 대학 교육목표 달성도와 교수법의 효과적인 이행을 확인하는 한편 학습자가 본인의 학습 결과를 확인하여 학습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함을 목표로 한다.

제3조 삭제 <2016.06.23>

제4조(평가방식) ① 본 대학에 개설된 강좌는 공통적인 평가기준과 아울러 각 교과별 특수성을 감안하여 교과목별 평가기준을 개발, 실시한다.

② 산학협동학습을 통하여 산업현장에서 요청되는 직업적 능력을 배양하고 산학연계 교육을 강화하는 평가방법을 개발한다.

제5조(평가방법) ① 성적은 정기평가와 수행평가로 나누어 평가하되, 성적배점은 정기평가 50%, 수행평가 50%로 평가한다. 단, 교과목의 특성에 따라 성적배점 비율을 달리할 수 있으며, 조기 취업자 성적은 성적평가특례규정을 적용하여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6.06.23., 2016.11.15., 2019.12.03>

② 커스텀 교과목을 포함한 Pass, NonPass과목의 경우 평가방법을 달리하며 평점평균에서도 제외한다. <개정 2016.06.23>

③ 정기평가는 중간평가와 기말평가로 나누어 실시하되, 교과목의 특성에 따라 필답고사, 발표 등의 방법에의할 수 있다.

④ 수행평가는 수시평가, 수업참여도, 출석상황, 보고서 등을 종합하여 학생의 능력 향상을 고려하여 평가한다.

⑤ 성적평가는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성적의 등급 분포 비율은 A등급은 40% 이내, A등급과 B등급의 합은 80% 이내로 한다. 단, 교과목 특성상 교무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학사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성적 등급 분포 비율을 조정할 수 있으며,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강좌의 경우 절대평가 방식으로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6.06.23., 2016.11.15. 2017.12.19. 2018.01.25., 2019.12.03., 2022.07.28., 2023.08.07>

1. 성적평가 대상인원이 10명 미만인 강좌 <개정 2023.08.07., 2024.04.01.>

2. 실험실습비율 100%인 실험실습 및 실기강좌

3. 원어민 강좌

4. 계약학과 강좌

〈전 호 신설 2019.12.03.〉

5. 계절학기 강좌 〈신설 2022.12.07.〉

6. 타 대학과의 공동교육과정 강좌 〈신설 2022.12.07.〉

7. 성인학습자 대상 강좌 〈신설 2023.08.07.〉

8. 그 외 학사관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강좌 〈신설 2023.08.07.〉

- ⑥ 교수는 100점을 최고점으로 하여 성적입력을 함과 아울러 성적평가 배점을 고려해 등급비율을 정하여야 하나 교과목 특성에 따라 등급별 비율 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단, “F”학점은 등급비율에서 제외시킨다. 〈개정 2016.06.23., 2018.01.25., 2023.03.31.〉

학 점	누적비율 (±5)
A 이상	40%
B 이상	80%
C 이하	100%

- ⑦ 평가항목별 점수비율은 강의계획서에 제시된 평가 방법 비율을 준수하여야 하며, 그 비율은 출석(10~20%), 중간/기말고사(40~80%), 발표/토론세미나/과제 등 기타(10~40%)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현장 실습과목 등 교과목 운영상 특별한 경우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17.06.19.〉〈개정 2018.03.14., 2022.07.28.〉
- ⑧ 단, 외국인 유학생 및 장애학생, 성적평가특례대상자, 대학원 선수강자, 성인학습자의 경우 위 항에도 불구하고 절대평가 방식으로 평가 가능하고 평가 방법 비율 산정에서도 제외한다. 〈신설 2017.06.19.〉〈개정 2018.01.25., 2023.02.02. 2023.08.07.〉
- ⑨ 공동교육과정 개설 교과목의 경우 위 항에도 불구하고 별도평가 방식으로 평가가 가능하고, 성적평가 결과는 해당 학기 수강내역에 포함하여 산정한다. 〈신설 2022.07.28.〉

제6조(평가구분) ① 평가는 교과담당 지도교수가 필요에 따라 수시로 시행하는 수시평가 또는 일제히 시행하는 정기평가로 기본적인 평가를 하고 출석점수와 평소성적(과제물, 수시고사, 수업태도 등)을 합산하여 종합 평가한다. 다만 실험실습, 현장실습 등으로 인하여 정기평가를 시행하지 않는 과목의 경우 평가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17.01.19., 2018.03.14〉

- ② 위 항 출석점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전자출석부에 기록하며, 지각 3회는 1시간 결석으로 인정하고, 출석시간 누계는 자동으로 처리하여 〈별표2〉와 같이 출석점수를 부여한다. 〈신설 2018.03.14〉

구분	출석	지각	결석	출석인정
출결체크 상황	수업시작 전후 10분 이내	수업시작 후 10분 경과	미출석	출석인정 서류 제출
표시	○	●	/	◎

- ③ 원격교육과정의 출결 처리 및 결과 반영, 성적평가 방법 등은 원격교육운영규정을 따른다. 〈신설 2020.11.26.〉〈개정 2023.08.07.〉

제7조(정기평가) ① 정기평가는 이수한 교과목의 학업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강의계획서에 의거 학기 중간과 학기말에 정기적으로 시행한다.〈개정 2024.04.01.〉

- ② 삭제 〈2017.06.19〉

③ 정기평가는 실시 1주일 전에 시간표를 작성 공고하여야 한다.

④ 기말평가기간 종료 후 1주일 이내 성적입력기간을 설정하고 해당 기간 내에 정기평가 결과 및 출석, 과제물 평

가 결과 등을 종합하여 통합정보시스템에 성적을 입력하여야 하고, 성적입력 완료 후 1주일 이내 통합정보시스템에 성적공개를 통해 성적조회 및 정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20.11.26.>

제8조(결시허가원) ①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정기평가를 받을 수 없는 자는 해당 과목 시험 실시 24시간 전까지 결시허가원에 증빙서를 첨부하여 학과장을 통하여 교무처장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허가를 얻은 자는 1회에 한하여 추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1. 질병 : 진단서 첨부

2. 입대 및 병무소집 응소 : 영장 원본 첨부(원본은 확인 후 반환함)

3. 사고, 기타 부득이한 사유 : 관계 증빙서류 첨부

② 시험불참의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지 못하거나 결시허가원을 제출하지 않은 학생의 성적은 0점으로 평점한다.

제9조(군입대 휴학자 학점) 수업일수 2/3선 이후 군입대 휴학자의 경우 사유 발생일까지의 출석, 중간시험, 임시시험 등을 감안하여 해당학기 성적을 인정할 수 있고, 이 경우 휴학원, 해당증빙서류, 성적인정신청서를 첨부하여 사유 발생일 전·후 2주 이내에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01.19., 2017.12.19>

제10조(편입학생의 학점인정) 편입학생은 전적교에서의 기 취득한 학점에 대하여는 학과단위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인정한다.

1. 편입생의 학점인정 사항은 「학사내규」 제42조(편입생의 학점인정 및 이수)에 따른다. <개정 2016.06.23., 2019.06.04., 2024.04.01.>

2. 전적교에서 이수한 해당 학과의 동일유사 교과목의 구분은 각 학부(과)에서 판단한다.

3. 삭제 <2019.06.04>

4. 삭제 <2019.06.04>

5. 삭제 <2016.06.23>

6. 삭제 <2016.06.23>

제11조(재입학생의 학점인정) 재입학생에 대하여는 기취득 학점은 100% 인정함을 원칙으로 하고, 교육과정의 변경 등으로 그 취득학점을 100% 인정하기 곤란할 경우 학과성적평가관리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인정학점을 제한하고 이후 적용교과목을 지정 적용할 수 있다.

제12조(편입학생의 학적부 기록) 편입학생의 학적부상 성적기록은 편입 후의 성적만을 기재하며, 전적교의 성적은 편입사정 인정학점 합계만을 기록한다.

제13조 삭제 <2016.06.23>

제14조(재수강 제도) ① 교과목의 성적 등급이 C⁺ 이하인 자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정규학기 및 계절학기에 재수강할 수 있고, 그 성적은 A⁰를 초과할 수 없다. 단, 학기 중 재수강 가능한 과목은 3과목 이내로 제한하며, 동일과목에 대한 재수강은 3회로 제한하고, 3회차 재수강 시 성적은 B⁰를 초과할 수 없다. 단, F학점 과목 및 자격증 취득 관련 과목의 경우 신청과목수 및 신청 횟수를 제한하지 않는다. <개정 2018.01.25., 2018.03.14>

② 기 이수한 과목을 재이수할 경우 원 취득성적은 무효가 되고 재이수 성적만을 인정한다. 단, 원 취득성적이 재이수 성적보다 높을 경우 원 취득성적을 인정한다.

③ 기 이수한 과목은 삭제하지 않으며 교과목명 뒤에 재수강 횟수에 따라 “(재)”, “(재2)”, “(재3)”으로 표기하고 해당

과목은 총이수학점 및 평점평균에 반영하지 않는다. 단, 원 취득성적이 재이수 성적보다 높을 경우 재이수 교과목에 이를 적용한다. <개정 2018.03.14>

④ 재이수한 과목의 학점 및 평점은 수강신청한 학기의 학점합계와 평점평균에 반영한다. 단, 원 취득성적이 재이수 성적보다 높을 경우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⑤ 재이수하여 성적을 취득한 경우에도 원 취득성적에 의해 이루어진 석차 등은 변하지 않는다.

<전 조 개정 2016.06.23.>

⑥ 재수강자의 학년별/이수구분별 재수강신청비율, 성적등급과의 상관관계 등에 대한 성적분석 및 학기 초 지도교수의 학생상담 등을 통해 학습 성과가 제고될 수 있도록 한다. <신설 2020.11.26.>

제15조(시험부정행위자처리) ① 시험감독 교수는 시험 중 부정행위자를 적발하였을 시 부정행위의 내용을 시험지 상단에 기록하고 해당 시험을 0점 처리한다. <개정 2016.06.23>

② 부정행위자에 대한 처리는 학생상별규정에 의한다.

제16조(평균성적의 산출) 성적의 평균은 평점평균으로 하되, 다음 방법에 의거 산출한다. 다만,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계산하고 이하는 반올림한다.

$$\text{평균성적} = \frac{(\text{각 교과목 학점} \times \text{각 교과목 평점})\text{의 합계}}{\text{수강신청 학점 계}}$$

제17조(성적정정) ① 일단 제출된 성적은 임의로 수정할 수 없다.

② 성적 조회 및 정정 기간이 지난 후 2주 이내에 성적 산출에 오류를 발견한 경우, 해당 교수는 성적정정요구서(증빙자료 첨부)를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 정정할 수 있다. <개정 2016.06.23., 2022.02.03.>

③ 교수의 착오 또는 부정행위에 의해 성적이 부여된 경우 성적정정 기간 경과 후에도 즉시 성적을 정정하거나 취소 처리하도록 하며, 졸업자 중 성적취소로 인해 졸업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수여학위를 취소한다. <신설 2018.01.25>

④ 위 3항과 관련하여 교수의 착오 또는 부정행위 정도에 따라 관련 규정에 의거 조치하도록 한다. 단, 교수의 착오에 의한 성적 정정(등급 변경)의 경우 교원업적평가 시 감점 조치한다. <신설 2018.01.25.> <개정 2018.03.14>

⑤ 위 2항과 관련하여 담당교수를 통한 성적정정이 성적정정기간 내 불가능한 경우 해당 학생은 별첨 신청서를 교무처에 성적정정기간 이후 3주 이내에 제출하여 성적정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사항에 대하여 학점인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성적을 정정할 수 있고, 또한 정정 전 성적으로 학사 및 장학업무 관련 결과가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그 결과를 정정할 수 있다. <신설 2018.01.25.> <개정 2019.02.01>

⑥ 위 3항과 관련하여 교수-자녀 간 부정행위로 인한 성적 취득 시 관련 성적 일체를 무효로 하며, 해당 교원 및 학생은 각각 교원인사위원회 또는 학생상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신설 2019.02.01>

제18조(평가자료) 교과담당 교수는 평가기준 자료를 성적평가 관련자료 관리 지침에 따라 성적정정기간 종료 후 2주 이내(계절학기 1주 이내) 교무처에 일괄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자료는 대학 기록물 보존기간 책정기준 가이드에 의거 10년간 보관하도록 한다. <개정 2016.06.23., 2018.01.25., 2024.04.01.>

제19조(성적등급의 환산) 성적등급이나 평점평균을 100점 기준으로 환산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1>의 성적평점환산기준표를 적용한다.

제20조(학점인정심의위원회) ① 학점인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점인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

다)를 구성하고 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교무처장으로 하며 그 밖의 위원은 총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타대학 계절학기 이수과목의 이수구분을 달리하고자 하는 경우
2. 국내외 대학과의 학점교류로 취득한 과목의 이수구분을 달리하고자 하는 경우
3. 성적평가특례자의 성적 평가 사항
4. 군 복무중 취득한 군이러닝 과목 학점 또는 군복무활동에 대한 학점 인정 사항
5. 토익성적우수자 이수면제 및 학점 인정 사항
6. 전과 또는 다전공신청자, 재입학자에 대한 학과의 학점 인정 결과
7. 편입생의 전적대학 성적에 대한 학과의 학점 인정 결과
8. 비교과 프로그램 이수자 중 학점인정 사항
9. 학생이 직접 성적정정 신청한 사항
10. 기타 성적처리와 관련된 사항

〈조항 신설 및 각 호 신설 2022.04.04.〉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9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12월 03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규정) 2018학년도 이전 신입생은 입학당시 성적평가특례규정을 적용하여 평가할 수 있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02월 0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04월 0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0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12월 0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02월 0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0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08월 0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04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성적평점 환산 기준표

성적	평 점		환산점수
A+	4.50		100
	4.45	~ 4.49	99
	4.40	~ 4.44	98
	4.30	~ 4.39	97
	4.20	~ 4.29	96
	4.10	~ 4.19	95
A0	4.00	~ 4.09	94
	3.90	~ 3.99	93
	3.80	~ 3.89	92
	3.70	~ 3.79	91
	3.60	~ 3.69	90
B+	3.50	~ 3.59	89
	3.40	~ 3.49	88
	3.30	~ 3.39	87
	3.20	~ 3.29	86
	3.10	~ 3.19	85
B0	3.00	~ 3.09	84
	2.90	~ 2.99	83
	2.80	~ 2.89	82
	2.70	~ 2.79	81
	2.60	~ 2.69	80
C+	2.50	~ 2.59	79
	2.40	~ 2.49	78
	2.30	~ 2.39	77
	2.20	~ 2.29	76
	2.10	~ 2.19	75
C0	2.00	~ 2.09	74
	1.90	~ 1.99	73
	1.80	~ 1.89	72
	1.70	~ 1.79	71
	1.60	~ 1.69	70
D+	1.50	~ 1.59	69
	1.40	~ 1.49	68
	1.30	~ 1.39	67
	1.20	~ 1.29	66
	1.10	~ 1.19	65
D0	1.00	~ 1.09	64
	0.90	~ 0.99	63
	0.80	~ 0.89	62
	0.70	~ 0.79	61
	0.60	~ 0.69	60

〈별표2〉 〈신설 2018.03.14.〉 〈개정 2018.09.05〉

출석 평점 환산 기준표

평가비율 출석비율	10%적용	15%적용	20%적용
66.6% 미만	F	F	F
66.6~69%	3	8	13
70~74%	4	9	14
75~79%	5	10	15
80~84%	6	11	16
85~89%	7	12	17
90~94%	8	13	18
95~99%	9	14	19
100%	10	15	20

성적정정요구서

학년도 학기

교 과 목		학 과(부)	학 년	학 번	성 명
교과목명	학 점				
기 제출성적		정정성적		첨 부 서 류	
평가내용	점 수	평가내용	점 수		
출 석		출 석		1. 사유서 1부 2. 출석부사본 1부 3. 시험지사본 1부 4. 관련레포트	
과 제		과 제			
중간고사		중간고사			
기말고사		기말고사			
합 계		합 계			
등 급		등 급			

위와 같이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성적을 정정코자 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담당교수 : (인) 확인자 : 학과(부)장(인)

초당대학교총장귀하

〈별표4〉

성적정정신청서

학년도 학기

소속학과		학번		성명
과목명	분반	현 등급(점수)	정정 등급(점수)	담당교수명
성적정정 신청 사유 ※ 허위 내용을 기재할 경우 학생상벌규정에 의거 징계될 수 있으니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내용을 육하원칙에 의거하여 기재바랍니다.				
제출서류명	※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별도의 자료가 있을 경우 기재			
위 기재사항 및 제출서류에는 허위내용이 없음을 서약하며, 해당 과목에 대하여 성적 평가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성적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요청합니다. 년 월 일 학생명 _____ (서명) 교무처장귀하				